

제349회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이 자료는 2월16일(목) 정무위 개회
시(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금 융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7. 2. 16.

목 차

I.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II.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4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15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16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19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22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23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26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27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29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32
핵심과제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4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37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38
핵심과제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40
핵심과제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42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48
III.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51

I.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2017년 금융정책 여건

2. 2017년 금융정책 방향

1. 2017년 금융정책 여건

1 대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

- 세계경제는 '08년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금리상승과 强달러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 (실물)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속에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전망
 - * 세계경제성장률(IMF, %) : ('00~'07 평균) 4.5 ('12~'15 평균) 3.4 ('16) 3.1 ('17*) 3.4 ('17년 성장률 전망) 美 2.2, 中 6.2, 선진국 1.8, 신흥국 4.6
 - (금융) 금리상승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와 强달러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
 - * 글로벌 펀드자금(美 대선후~16년말, 억달러) : 선진국 (주식)+633 (채권)△220 신흥국 (주식)△145 (채권)△147
- 美 新정부의 정책방향과 '16년부터 이어져온 美 금리인상 기조, 유럽·중국·신흥국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① (美 금리인상 속도) 美 新정부의 정책 구체화와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될 소지
 - * 16.12월 FOMC : 기준금리 인상(25bp) & '17년 3회 인상 전망(점도표 중위값)
 - **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 : (15년말) 2.27 (16.11.8) 1.85 (16년말) 2.44
 - ② (유럽) 브렉시트 진행과정, ECB의 통화정책 방향, 이탈리아 은행부실 등 불안요인이 지속
 - ③ (중국) 통상환경 악화, 부동산시장 위축,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 및 외화보유액 감소*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 * 중국 외화보유액(조달러) : (15.12월) 3.33 (6월) 3.21 (8월) 3.17 (10월) 3.12 (11월) 3.05
 - ④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 强달러에 따른 자금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 * 美 대선 이후 신흥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율(16.11.8~12.30, %) : (터키) +11.5 (멕시코) +13.1 (남아공) +4.1 (인도네시아) +3.7 (말레이시아) +7.5

2 국내 여건 및 리스크 요인

<국내 여건>

- ① (거시경제) '17년 국내경제는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
 - * 韓 성장률 전망 : (IMF) 3.0% (OECD) 2.6% (한국은행) 2.5% (기재부) 2.6%
 - (내수) 유가상승, 내구재 소비둔화,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
 - * 내구재 판매(전년동기비,%) : (15년) 10.2 (16.上) 8.4 (3Q) 1.3 (10월) 0.7 (11월) 1.8
 - * 국내건설수주액(전년동기비,%) : (15.3Q)50.4 (4Q)40.1 (16.1Q)13.8 (2Q)△6.3 (3Q)2.7
 - (수출) 유가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중국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
 - * 수출증가율(통관)(전년동기비,%) : (14년)2.3 (15년)△8.0 (16년)△5.9
- ②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요인보다는 美 금리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외환·채권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환율) 달러화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될 우려
 - * 달러인덱스 변화율(%) : (16년중) +3.6 (美 대선후~16년말) +4.4
 - * 원/달러 환율 변화율(%) : (16년중) +3.0 (美 대선후~16년말) +6.4
 - (금리) 美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美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국내금리가 이에 동조화되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 * 국고 3년 금리(%) : (15년말) 1.662 (16.11.8) 1.425 (16년말) 1.638
 - 10년 금리(%) : (15년말) 2.076 (16.11.8) 1.702 (16년말) 2.074
 - 美 기준금리 인상후 국내 국채금리는 美 국채금리 대비 소폭 상승(3년물) 또는 하락(5년, 10년물)하며 내외금리차가 축소
 - * 韓국채금리-美국채금리 차이(bp) : [美대선전] (1y)+78 (3y)+41 (5y)+19 (10y)△15 [16.12.30] (1y)+76 (3y)+19 (5y)△13 (10y)△37
 - (주가) 외국인 자금 유입* 속에 주가가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나,
 - *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조원) : (美 대선후~16년말) +1.6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③ (금융산업)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

- 금리상승시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이익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 은행의 순이자마진 증대, 보험사의 이차역마진 해소 등으로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한 측면 또한 존재
- 한편, 그간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금융회사 자본비율이 지속 개선되는 등 양호한 건전성 수준 감안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

<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

	15.4분기(A)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B)	B-A(%p)
은행 BIS 비율	13.9	14.0	14.4	14.8	+0.9
생보 RBC 비율	278.3	284.7	297.1	300.5	+22.2
손보 RBC 비율	244.4	251.4	269.1	280.8	+36.4
증권사 NCR 비율*	-	528.7	547.5	571.8	+43.1**
저축은행 BIS 비율	14.1	14.2	14.5	14.7	+0.6

* 16년부터 新NCR 기준 전면시행 ** 16.3분기와 16.1분기 값의 차이

④ (기업자금시장) 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

- 중소기업을 위주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은행기업대출(1~11월중 증감, 조원) : (12~14년 평균)48.7 (15년)58.2 (16년)35.8
 대기업 : (12~14년 평균)21.0 (15년) 1.1 (16년)△0.5
 중소기업 : (12~14년 평균)27.8 (15년) 57.0 (16년)36.3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태도가 강화*되고 가산금리가 시장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

* 은행대출태도지수(강화<0<완화) : (15.2Q)+9 (15.4Q)△3 (16.2Q)△19 (16.4Q)△17

** 16.11월중 중기(신용대출) 가산금리 변화 : 연초대비 +29bp, 6월대비 +20bp

- 금리상승과 불확실성 증대로 양극화가 확대*되어 非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소지

* 신용스프레드(% AA-와 A+ 등급간) : (15년말) 40.6 (16.11.8) 63.7 (16.12.30) 66.2

<리스크 요인>

-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불안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

① (가계부채) 8.25대책의 효과, 금리 상승세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 수준

* 은행 가계대출 증가(조원) : (14년)+38.6 (15년)+78.2 (16년)+68.8

-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금리상승에 대응하여 한계·취약차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조원) : (14년)+26.8 (15년)+31.9 (16.1~11월)+49.2

② (기업 자금조달)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

* 한계기업[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 비중('10년→'15년, %) : (전체) 11.4→14.7, (해운) 8.8 → 18.6 (조선) 6.2 → 14.7 (철강) 4.6 → 12.3

③ (금융시장 불안) 美 금리인상 등으로 내외금리차 축소, 글로벌 시장 불안 확대시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

* 外人 주식자금 순유입(조원) : (16년중)+12.1 (美 대선후~16년말)+1.6
 外人 채권자금 순유입(조원) : (16년중)△12.6 (美 대선후~16년말)△2.3

- 美 금리 동조화로 국내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채·회사채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 회사채 시장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 국채·회사채(A+) 신용스프레드(%) : (15년말) 98 (16.11.8) 114 (16.12.30) 115

** 회사채 순발행 규모(억원) : (16.7월)+292 (9월)△6,431 (11월)△13,584 (12월)△7,091

④ (취약계층 애로) 금융접근성 감소, 금융비용 증가로 상환능력이 낮은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가능성

➔ 대내외 불안요인이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등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참고

2016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베이 결과

◆ '17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1,000명) 및 전문가 집단(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KSOL, '16.12월)

* 설문 설계 : 금융개혁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반기별로 정기적인 서베이 실시중('15.12월, '16.8월, '16.12월)

1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인지도) 일반인·전문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

* 금융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 : 일반인 54.1%, 전문가 100.0%

○ 일반인의 경우 '16.8월 서베이 결과(65.9%)*에 비해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

* '16.8월 서베이 결과, 일반인 중 4개 이상의 금융개혁과제를 인지한 비중이 당초 97.4% 였으나, 설문 수행기관인 한국갤럽에서 데이터 처리상 오류로 인해 잘못 산정된 것으로 알려움에 따라 65.9%로 정정

< 설문 대상 금융개혁과제 8개 >

'16.8월 설문	'16.12월 설문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ISA, 내집연금 3종세트, 성과연봉제, 간편결제·간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계좌이동서비스, 클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ISA,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 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 (금융당국의 노력) 일반인의 평가는 '15년보다 상승(41.8점 → 41.9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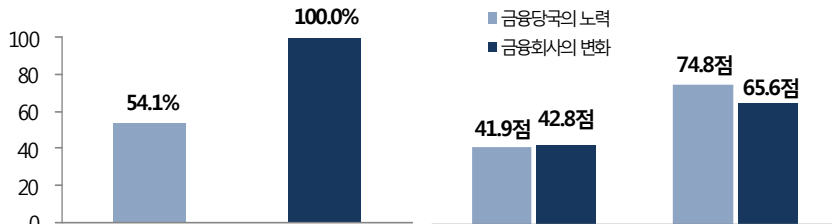
○ 전문가의 평가는 '15년 서베이 보다 다소 하락(79.9점 → 74.75점)

□ (금융회사의 변화)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 국민은 금융회사의 변화를 조금 더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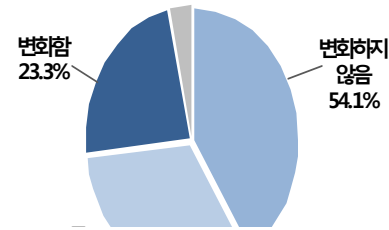
○ 특히, 일반 국민은 '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의 변화 노력을 높게 평가('그렇다' 이상 18.3% → 23.3%)

<금융개혁과제 4개 이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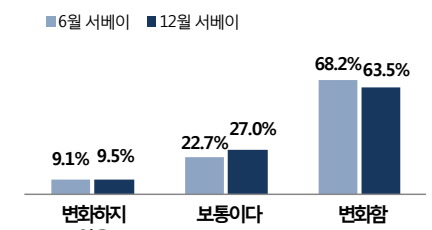
<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



<금융회사 변화 - 일반인>



<금융회사 변화 - 전문가>



□ (만족도) 전문가는 '15년 금융개혁 서베이 결과(63.6%)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60.5%)를 보임

○ '15년 서베이와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30.5%)를 주요 만족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23.5%)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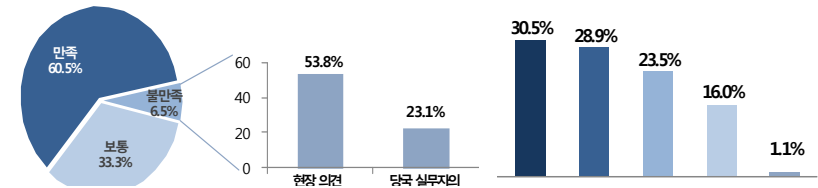
* '15년 서베이 만족도 :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40.1%), 현장중심의 개혁(38.7%)

○ 금융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일부 전문가는 '현장의견 수렴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

* '15년 서베이 불만족 주요 요인 :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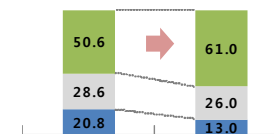
<금융개혁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만족하는 이유>



○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 확립 여부는 '15년 조사보다 높게 평가됨

('그렇다' 이상 답변 50.6% →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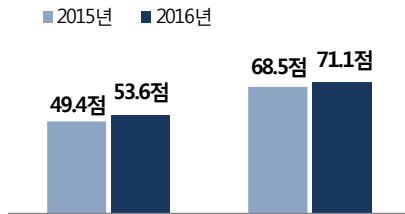
* '그렇다' 이상(%) : (금융회사) 74.3, (금융협회) 81.8
<-> (학계) 40.0, (일반회사) 38.5

□ (전반적 금융인식) 금융 서비스 품질개선, 신뢰도, 편의성 등에 대해 전문가(60~70점)는 일반인(30~50점)보다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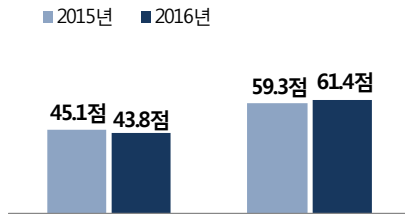
○ '15년과 비교해서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향상도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 전문가 모두 상승

- 다만, 일반 국민은 '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및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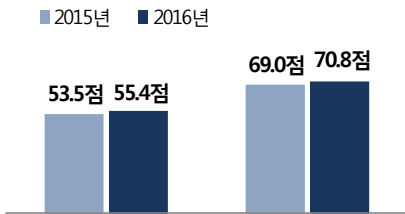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향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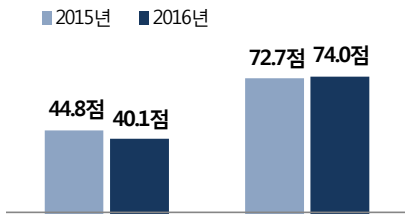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정도>



➔ 향후 금융개혁은 금융회사의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

2 2017년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 중점 추진과제

○ 금융권 정책고객(금융사·협회 등)과 비금융권 정책고객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으로 선정

○ 금융업권은 여전히 금융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순위	중점 추진과제	응답률(%)	응답률(%)	
			금융업권	비금융업권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5.0	41.0	50.6
2	금융규제개혁	17.5	23.9	8.4
3	금융/IT 융합 등 핀테크 활성화	11.0	13.7	7.2
4	기업구조조정	9.5	6.8	13.3
5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7.0	4.3	10.8

□ 주요 위험 요인

○ (대외) 미국 금리 인상,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둔화 등

○ (대내) 가계부채 위험 증가, 취약업종 기업부실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 정책 목표별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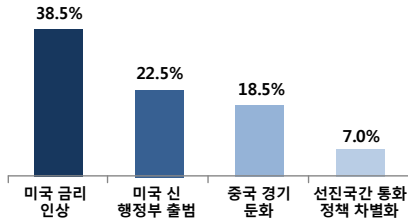
○ (금융 안정) 가계부채 관리 → 금융시장 안정 → 올바른 지배 구조 정착 → 기업구조조정 順

○ (경쟁과 혁신) 금융규제개혁 → 금융당국의 변화 → 핀테크 활성화 → 해외진출 활성화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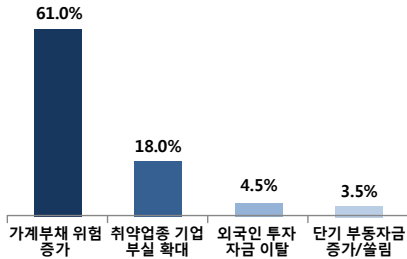
○ (기업과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 → 정책금융 역할강화 → 서민 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 금융사기/범죄 근절 順

【 주요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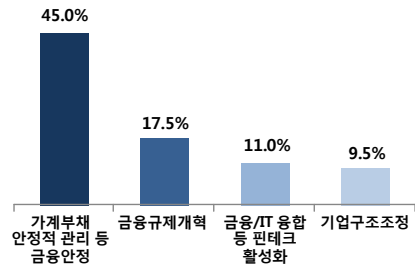
<대외 위험요인>



<대내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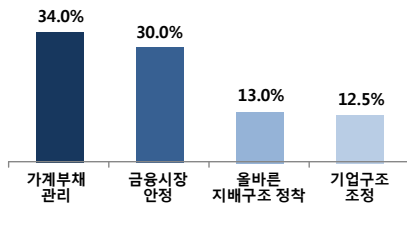


<17년 중점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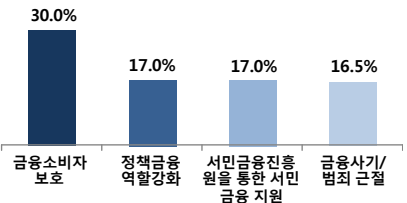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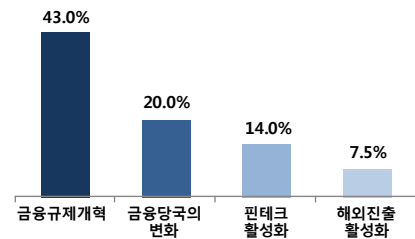


<정책 목표과제-경쟁과 혁신>

<정책 목표과제-튼튼한 금융>



<정책 목표과제-기업과 서민>



참고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자 간담회 결과

1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2.11(일)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장 등
 -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거래소 이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전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장

-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기업부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

2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2.14(수) 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기업은행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장

-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할 필요

3 업권별 간담회

- ◆ 일시 : '16.12.13(화), '16.12.15(목)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등
 - 업권별(은행/보험/금융투자/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 업권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금융개혁을 멈추지 말고 추진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필요

2. 2017년 금융정책 방향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①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②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③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①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②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

③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

⇒ 3대 핵심과제 및 12개 실천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

【 핵심과제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 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 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 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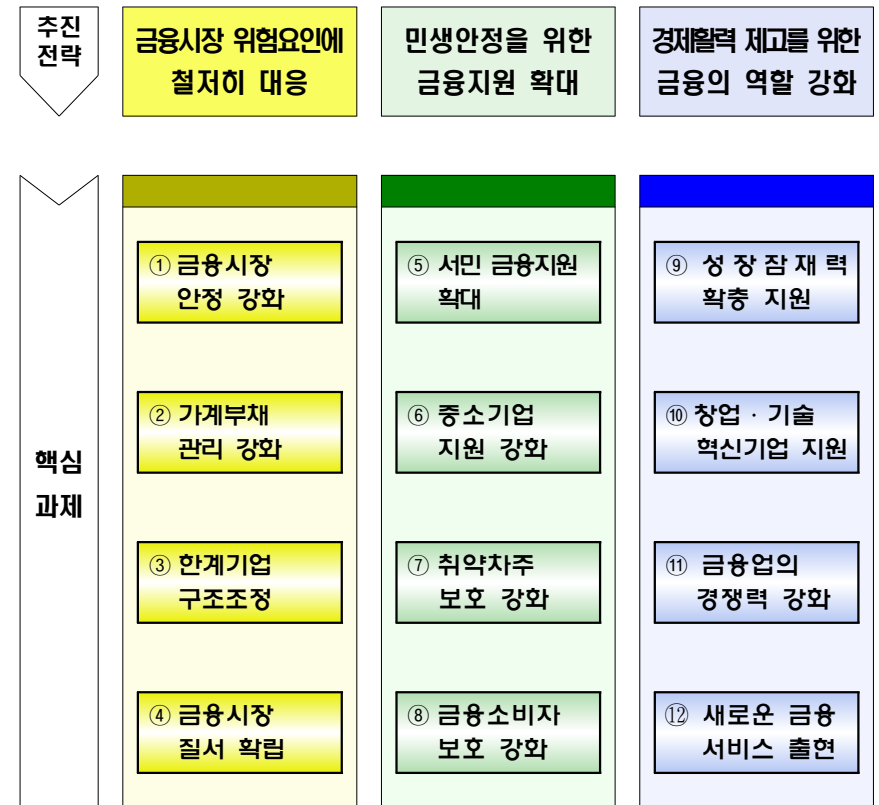
【 핵심과제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 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 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 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핵심과제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 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

Ⅱ.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1.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산업의 안정성 제고
 -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금융시장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

■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 가.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나.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
- 다. 금융권 건전성·안정성 제고

■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 나.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
- 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
- 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점검 강화

■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 가.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
- 나.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 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

가 리스크 점검·대응체계 강화

- (위험점검체계 마련) 비상대응체계(금융위·금감원 및 협회·유관 기관 참여)를 통해 모든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비상상황실 운영)
 - 금융시장, 서민금융, 기업금융, 금융산업 4개팀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일일 1회(필요시 수시) 보고
- * <점검예시> (금융시장) 국내외 금융시장 특이동향 등
 - ▶ (기업금융) 기업자금사정, 중소기업 여신 동향 등
 - ▶ (서민금융) 채무불이행자 동향, 서민금융 지원현황 등
 - ▶ (금융산업) 헤지포지션 조정 등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자본역력 등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금융안정 유관 기관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정례 협의 강화
- (스트레스 테스트) 엄격한 기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충격 흡수역력 정밀 점검
 - *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주요 취약요인 등을 연1회 이상 점검
 -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화(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 → 점검결과에 따라 신속히 맞춤형 대책* 마련·시행
 - * 자본 확충,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
- (시장과의 소통확대) 국내외 시장 전문가 Network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권별 리스크 점검

나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

- (회사채 인수지원) 산은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17.1분기)
 - * 미매각이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발행 BBB~A등급 채권의 최대 30%를 산에서 인수
- (회사채 유동화 보증) '17년 중 P-CBO를 1.6조원 지원(신보)
- (회사채시장 활성화) 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BBB→BB) 등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16.7월)을 차질없이 이행
 - *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17.1분기)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17.2분기) 등
- (채권시장 안정펀드)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a) 재가동 등 비상조치도 철저히 사전 준비

다 금융권 건전성·안정성 제고

-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금융권 영향 분석 및 관련 제도 정비
 -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져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17.4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8년 시행)
 - IFRS4 2단계 도입('17.상 기준서 확정 → '21년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연착륙 방안 마련
- (외화유동성 제고)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 대외 불안시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LCR 규제 도입('17.1.1일 시행)

-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충당금 적립률 강화**(17.1분기)
 -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7.1분기) 및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한 예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 도모
 - (여전사) **카드대출 현황 및 증가원인, 카드대출 금리체계·운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17.1분기),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신규 감독체계)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감독체계 마련
 -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P2P 대출 실태조사 정기화**(반기 1회) 등 모니터링 강화(17.상)
 - 금융사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상시 분석·점검** 및 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침해정보 공유체계 강화(17.2분기)

핵심과제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값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나눠 갚음”으로써 『**빛을 줄여나가는 구조**』 형성
 - **잔금대출**(17.1.1이후 분양공고분),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등 **소 금융부문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 (여신심사 선진화) 금융업권의 활용도, 해외 선진사례 등을 감안,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 마련(17.1분기)
 - (1단계)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 DTI는 **산정방식 합리화**(17년)
 - (2단계)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18년)
 - * 은행권부터 개발·시범적용하고, 여타업권은 은행권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적용
 - (3단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 정착**(19년 이후)

나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

(1)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

-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확대**(17.1.1부터 적용)
 - (서민층에 집중) **주택가격 요건 강화**(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신설**(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접근가능성 제고**
 - *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6→5억원,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年7천만원 신설, 주택가격 9→6억원, 대출한도 5→3억원
 - (실수요자 지원 강화)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3년내 처분) 개선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대출수요 억제**
 - *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미준수시 연차별 가산금리 부과
 - (공급규모 확대·비중변경)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41→44조원) 하고, 금리상승기에 대비하여 **순수고정금리대출 확대 추진**
 - * 디딤돌대출(8조원 유지), 보금자리론(14.5조원→15조원), 적격대출(18조원→20조원)
 -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비중을 현재 50%수준에서 매년 15%p씩 확대

(2) 전세자금·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출시

-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입주자전용 보증자리론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상품 출시**(17.1월중)
 -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 공급**(17~18년, 2년간)
 - * 신규분양 주택을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는 입주예정자에 대해 만기 10~30년, 고정금리, 비거치·분할상환 조건 (DTI는 80%까지 허용)
 -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 * <사례 : 1억원 대출(이자 연3%, 만기2년)시>
인센티브금액 총 102만원 (이자부담감소 29만원, 보증료감소 19만원, 소득세감면 54만원)

(3) 책임한정(비소구형) 주담대 시범사업

- 저소득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중 일부를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 실시(17.상)
 - * 채무자 책임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 그 외 재산의 소구권 제한
- 주택금융공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민간 은행에도 확산 유도**

(4) 고령층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집연금 개선

- 그동안 제기된 **주택연금 가입관련 주요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1종)의 가입요건 개선**(17.1분기)
 -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축소되었던 주택연금 월 지급금 회복 (17.4분기)

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

- **(지원 강화)**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이 **경영·재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저리자금 프로그램과 연계**
 - **창업·운영자금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17.1분기)
 - * 미소금융 지원규모도 '16년 0.5조원→'17년 0.6조원으로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 **(리스크관리 정교화)** 자영업자 대출 관련 과밀업종 대출 억제 등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점검 강화

- **(모니터링 강화)** 업권별·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현재 주1회 개최 원칙으로 운영중인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특별점검TF**를 지속 가동
 - 현행 일별(은행), 격주별(상호금융), 월별(저축은행, 여전, 보험) 점검체계의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특별점검 연장 실시)** '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
 - '17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대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스트레스 테스트)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리상승이 쏠 업권,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분석**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
 - * 선제적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핵심과제③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경기민감업종)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적극 추진
 - 조선·해운업 이외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
- (상시구조조정)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 매분기별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공개
 -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캡코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천→5천억원)하고 대기업도 지원

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

- (외생절차 효과성 제고) 기축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 활성화 지원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활성화
 -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 →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
 - 구조조정채권의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 → 구조조정채권 매각 지연 문제 해소
 -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핵심과제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

- (외계)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회계감사-감독·제재’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발표(17.1.20일)
 - (선임) 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등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일정 수준 이상 회계법인에만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 부여
 - (감사)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확대 및 감사대상회사와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하고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 (감독·제재) 감리주기 단축(25→10년, 다만, 자유선임회사는 6년내 우선 감리) 및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과징금 강화 등 제재 실효성 제고
- (신용평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
 - 민간금융회사(약 105개사)의 자체신용도를 '17년부터, 일반기업(약 320여개사)은 '18년**부터 공개
 -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의뢰에 의한 신용평가 허용 (17.1분기)
 - 발행사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이 발행사 대신 신평사를 선정하는 “신평가 선정신청제”를 시행 (17.하)
 - 불건전 영업·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조정 하고, 부실평가 손해배상 책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17.1분기)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등 적극 제공
 - 금융업권별 설명회(1월), 스튜어드십코드 선도 참여기관 간담회(1분기) 등 코드 도입 초기의 관련 업계 확산을 지원

나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 (공매도·불공정거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 상황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차단

* 공매도 거래자 증자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

○ 시장질서확립 T/F(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16.12월 구성)를 통해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대응 강화

○ 모바일 포렌식* 도입으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 개선('17. 상반기)

*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을 통칭

□ (공시제도) 자율공시 중 기술·특허 관련 중요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1월)하고, 기타 중요항목도 검토·발굴하여 의무공시로 전환

*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요정보가 누락 없이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여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2분기)

□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

○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요건 신설, 폐업후 편법적 영업 금지,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17.상)

○ 파급력이 높은 방송매체 출연자에 대한 상시검증* 등 감독 강화

* 예: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 제한 (금융당국-방송사 MOU)

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착근 유도) 불법자금의 은닉을 적발하기 위한 현행 제도 운영의 취약·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서 건수 위주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보고내용 및 심사분석의 품질을 제고(연간)

○ 자금의 실소유주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 저위험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선업무 효율화('17.하)

○ 민간자격제도 도입,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가 육성 기반 마련('17.상)

□ (新금융환경에 대응) 강화된 국제기준, Fin-tech 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에 대응한 규율체계 마련

○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진단 및 시범사업 추진('17.하)

○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에 따라 외환거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마련('17.하)

2.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기본 방향 >

-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
-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
- 금리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연체 차주의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 가.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나. 청년·대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다.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

■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 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舊Fast Track) 신설

■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 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 나.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
- 다.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

■ [핵심과제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나. 금융사고·금융사기 근절
-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업무 체계 개선

핵심과제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

가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정책자금 공급 확대)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연 5.7조원(55만명) → 7조원*(67만명)으로 대폭 확대
 - * (햇살론) 연 2.5조원→연 3조원, (새희망홀씨) 연 2.5조원→연 3조원, (미소금융) 연 0.5조원→연 0.6조원, (바꿔드림론) 연 0.2조원→연 0.4조원
-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정, 조손(祖孫)가정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17.2분기)
 - * 예) 미소금융 저신용 취약계층 생계자금(1,200만원 한도, 금리 3.0~4.5%)
 - * 예) 한부모가정(→학자금 대출), 새터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등 지원대상별로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
- 특히, 취약계층이 긴급 자금수요(의료비 등)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 확대*(17.2분기)
 - * 예) 성실상환시 500만원 이내 지원 → 긴급목적 증명시 1천만원 이내 지원
- (중금리 대출 활성화) 사잇돌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 저변을 확대
 - * 그간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총 3,729억원)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 자체 중금리 대출 시장도 '16년 0.9조원 규모로 성장(금융회사 취급액 자체 추정 기준)
-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17.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3년간 총 0.7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지원 지속
 - 취급 금융회사를 은행·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 * 취급 저축은행도 30개→38개로 확대('17.1월)
- (신협 관계형금융 강화) 상호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합의 자금운용을 '조합원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활성화
 -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규제 개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7.1분기) 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억제도 병행

나 청년·대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17.2분기)
 -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예: 800만원→1,200만원)
 - 저소득 청년·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신설
 - * 예) 지원 한도 2,000만원 이내, 금리 4.5% 이하
 - 최근 경기악화로 늘어난 재학·구직기간을 감안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예: 4→6년) 및 **상환기간**(예: 5→7년) 연장
- (장애인)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도 제고, 불합리한 대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17.상)
 -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실시
 - * (예) 불합리한 대출·카드발급·보험가입 거절관행 개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신탁을 통해 장애 자녀에게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면제) 활성화 등
 - 모바일·ATM 및 금융회사 창구 등에 대한 장애인 이용 접근성 제고

다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

-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여개)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17년중)
 - 전국 어디에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1.5시간 내 도달**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도시·농어촌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 (고용·복지 지원과 연계 강화) 서민의 자활·재기를 위해 필요한 서민금융·고용·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종합 지원**을 추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별도 이동없이 **고용·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 시범사업*** 실시(‘16.12월~‘17.3월)
 - * 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중앙·부천·대전)에서 시범사업 운영중

핵심과제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정책금융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9조원)
 - (산·기은·신·기보) 중소기업 지원을 전년 대비 **6.8조원 확대**
 - * 산은기은(조원): (‘16)58.7→(‘17)62.5 (+3.8), 산기보(조원) : (‘16)62.7→(‘17)65.7 (+3)
 - (산·기은) 중견기업 지원을 전년 대비 **2.2조원 확대**(19.6→21.8조원)
- (유동화보증 지원) 채용조성 등을 통해 보증기관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보증**’을 확대·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 * 既 편입된 회사채의 경우 일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부 상환 후 연장 지원(약 1.3조원)하고 우수혁신형 기업 신규 회사채 발행도 적극 지원(연간 최대 약 3천억원)
- (자본시장 활용)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클라우드펀딩** 발행지분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외주식거래 플랫폼(KSM)**에서 거래되는 경우 **양도제한 예외 인정**(‘17.상)
 - *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경우 1년간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제한됨
 -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공모규제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외시장 거래편의성 제고**(‘17.상)
 - * (현행) 소액출자자(지분을 1%미만, 평가액 3억원 미만)만 매출신고 면제(개선)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일반주주(지분을 10%미만)의 매출신고 면제
 -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17.상)
 - *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운영
 - 중기특화증권사 **중간평가**(‘17.5월)를 통해 실적이 극히 미진한 경우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향도 모색

- (현장점검 강화) 중소기업의 현장에 보다 밀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금융현장지원단'이 중소·중견 기업까지 현장방문·애로사항 점검(1월 기업금융 집중점검의 달 운영 등)

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 (상환유예·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원칙 1년)
 - ※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유도
- (신규 유동성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산·기은)·보증(산·기보) 등 제공
 - * (산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既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 (기은) 해운업 협력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금리 △0.5%p 우대)
 - 특히,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재편을 준비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지원
 - * 사업재편지원자금: 산은, 2.5조원, 금리 최대 △0.5%p 우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산기보, 3,00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보증비율 85%→90%
- (상담 및 컨설팅) 조선·해운업 밀집지역에 설치한 현장반*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
 - *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에 설치, 각각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 2인 파견
 -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으로 안내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해소

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舊Fast Track) 신설

- (유동성 지원 강화) 신·기보 특별보증시 보증비율을 60~70%로 상향(舊패스트트랙 40%) * 10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0.2%p
 -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추가 우대(최대 0.3%p)
 -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 무보에서도 상환유예·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 공동지원
 -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신·기보 우대보증 지원
 -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2%
- (이용기간)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 등을 감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장기 이용을 방지
 - * 舊패스트트랙 및 법원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3년 미만 소요
 - 다만, 종료 시점에서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 (경영관리 강화)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여 대상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연 1회)
 - 채권은행과 경영개선목표,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시하는 특별약정 체결*
 - *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 (운영기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상시 운영

핵심과제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

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 (채무연체 사전 예방)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확인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 지원
- (연체차주 보호) 서민층 주거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 추진
 - 현재 연체이자율 수준(연 11~15%)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나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자 권리보호능력 제고) 불법 추심 피해예방,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구축(17.상)
 -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채무자 권리보장 강화
- (민간 채권매입·추심 관리강화) 과도한 채권매입·추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세스 관리 및 부실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17.1분기)
 - * (주요내용 예시) 매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과거 불법 추심 관련 기록 확인 의무(Due Diligence),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 등
 -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유도(17.1분기)
 -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채권추심회사의 감독책임 부여 등(신정법 개정)

다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

- (연체 이전) 현재 은행권에 적용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도 확대 시행(17.하)
 - * 대출만기 前 상환방식 변경, 이자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 안내
 - 신용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한계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연체 이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강구
 - (이자부담 경감) 채무자가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자율 상한(예: 10% 수준) 설정(17.2분기)
 - *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에서 이자율을 원 채무의 1/2까지 경감 가능하나 고금리(30%) 채무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부담(15%) 지속
 -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추가 경감*
 - * 예) 프리워크아웃시 1/2로 조정된 이자율에서 30%를 추가 인하
 - (상환방식 다양화) 신복위 워크아웃시 매월 납부금을 채무자의 경제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균등·체증식* 등 다양화(17.하)
 - * 예) 체증식 : 총 8년의 상환기간 동안 초기 2년은 10%, 잔여 6년간 90% 납부
 -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채무 면제 등(17.1분기)
 -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경우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Fast-Track*의 전국 확산(5개→14개 지방법원)을 통해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 신속 연계 지원(17.상)
 -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9개월→최소3개월) 및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핵심과제 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

- (금소법 제정)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감독을 재분류·체계화하고, 전문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17.1분기)
 - * 금소법 제정안 '17년 1분기 중 국회 제출
- (Cooling-Off 제도 도입) 대출상품 등에 대해 우선시행(16.12) 중인 금융상품 계약 철회권(Cooling-Off)을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
 - *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하던 숙려제도 관련 근거 조항을 금소법에 도입
-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 * 투자성 상품 이외에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까지 취급 가능
- (예금자보호 강화) 예금보험사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
 -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이를 예금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17.4분기)
 -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17.하)

구분	예금금액	예금보험금 수령액 (1년 내 재부실화시)
합 병 계약이전	A은행 : 4천만원 B은행 : 4천만원	8천만원
		중전 : 5천만원 → 개선 : 8천만원

-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속 지급*(예금수취기관 적용)(17.하)
 - * (현행) 은행은 약 5개월 소요 → (개선) 7영업일 수준으로 단축(시스템 구축기간 부여)

- (맞춤형 금융교육) 청소년(교과반영), 성인(신용관리), 은퇴준비자(노후 자산관리), 금융소외자(핀테크 이용 등) 등 맞춤형 교육방안 발표(17.1월)
-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개인 신용정보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체계를 확립(17.상)
 - 신용정보법 규율대상을 금융회사로 명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을 해소
-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대부업자의 연대보증을 감축하여 제3자 피해 가능성을 경감하고 대출계약, 광고 등 주요 영업관행 개선(17.1분기)
 - 대부중개 모범규준 및 표준위탁계약 마련*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분쟁·민원 등을 예방
 - * 주요내용 : 상품요건 과장 등 불건전영업 금지, 배상책임 발생시 변제방법 명확화 등
- (조치명령권 제도 정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 조치명령권*(자본시장법 §416)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비
 -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산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나 금융사고·금융사기 근절

- (신중 금융사기 규제 강화) 신중 불법사금융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 유사수신행위 조사·자료요구권(계좌조회권 포함)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유사수신키법 개정 추진, 17.1분기)
- (보험사기 예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보험사기 다잡아」 업그레이드(~17.4분기)
 - ※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적발·제재결과 공유, 관계기관 실무 정례회의 등 공·사 보험 조사업무 협력 강화도 추진

□ (민생금융범죄수의 적발노력 강화) 서민대상 범죄로 조성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조기 적발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

○ 금융회사의 불법사금융, 보이스코싱, 불법도박 등 서민범죄 관련 의심거래 보고 및 FIU의 심사분석자료의 법집행기관 제공 확대(연간)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업무 체계 개선

□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공시(현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수수료만 공시)(‘17.上)*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17년 1분기 중 국회 제출 예정

○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소비자에게 설명

□ (비교공시 확대) ISA비교공시 수준으로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 (‘17.상)

○ (펀드) 복잡·난해한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보완하여 일반 투자자를 위한 펀드 수익률 비교공시 전용사이트(펀드다모아) 개설

○ (투자자문)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비교공시 체계 마련

○ (신용평가사) 부도기업의 과거 등급 추이, 등급변동 상세정보* 등 비교공시 항목 확대

* 등급이 큰 폭으로 변화한 기업의 명단,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3.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기본 방향 〉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개혁을 완수하여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 新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의 혈맥’ 기능 강화
-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를 통해 금융업 경쟁력을 제고
-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 지원

■ [핵심과제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가.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
- 나.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핵심과제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 가. 제2단계 기술금융 추진
- 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
- 다. 재기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핵심과제⑪]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 가.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
- 나.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 (1) 신탁업 역할 확대
 - (2) 보험업 경쟁력 강화
 - (3)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4)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 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

■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 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 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 다.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핵심과제 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가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

- (총공급 확대)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17년중 '16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186.7조원 공급
 - 특히, 신·기보등 보증기관은 기금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집행

<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계획 >

구분	산은	기은	신보	기보	합계
'16년 계획	61조원	55조원	43.7조원	19조원	178.7조원
'17년 계획	62.5조원	58.5조원	45.7조원	20조원	186.7조원

- (신성장산업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포함한 미래 新성장 산업에 '16년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 자금공급
 - * 시설·운영 자금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금융 제공

나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원체계 효율화)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등을 통해 복잡 다기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기준을 단일화
-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 강화) 신성장위원회*, 정책금융협의회**,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지원효과 분석 및 애로사항 해소
 - * 금융위,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 연도별·신성장분야별 정책금융 자금집행 규모 수립 등
 -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 체널
- (맞춤형 보증시스템 구축) 창업·성장기업에는 장기 분할상환 보증 구조를 도입하여, 사전 단계부터 합리적인 보증이용과 상환 유도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을 매칭하여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 재정자금과 결합하여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 지속 조성('16년말 1.1조원)
- (금융권 공동 일자리박람회) 은행, 정책금융기관, 핀테크사 등과 협업을 통해 '금융권 창업·일자리박람회*' 매년 개최 검토
 - * '16.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취업생과 중소기업간 구인·구직 매칭,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 261개 기업, 약5,200여명 구직자 참가)
- (취업연계)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금융권 협업)
 - *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등
- (신규일자리 창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활성화, 독립투자자문업 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 창출(상사)
 -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 금융·IT 부문 인력을 총 400여명 신규채용
 - 외은지점 등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원활히 진출, 인력 채용할 수 있도록 국내진입 관련 애로 적극 해소

핵심과제⑩

창업·기술혁신기업 지원

가 2단계 기술금융 추진

- (기술금융 공급확대) 기술금융 대출·투자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17년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누적) 추진

* [대출] (당초) '17년 67조원, '19년 100조원 → (확대) '17년 80조원, '19년 130조원
[투자] (당초) '17년 0.5조원, '19년 1조원 → (확대) '17년 1조원, '19년 4조원

- (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하여 기술금융 체제를 완비('17.상)

* 기술평가 모형과 여신심사 모형 일원화 방안, 향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지침 등

-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 운영('17.2월)

* (구성) 금융위, 금감원(데이터 축적, 검증 등 필요시 참여), 은행권, TCB, TDB 등

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

- (유망기업 중심의 상장·공모제도 개편)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17년초 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

*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신설 등을 위한 관련 거래소규정 개정·시행('17.1월)

- (코넥스시장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시교육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개선

* 증권사의 코넥스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지원, 업종별 IR 활성화 등

- (클라우드 펀딩)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16.11월 발전방안 차질없이 추진)

* ('16년 실적) 성공기업 110개, 펀딩액 174억원 조달 → ('17년 목표) 200개 내외, 300억원 조달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규제 완화* 추진 및 청약시스템 인터페이스 개편 등 편의성 제고('17.5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업체명·중개업체명,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 신규 조성('16.12월)된 'Seeding 펀드'(80억원)를 통해 본격 투자

-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을 확대('17.상)하고, 창업·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펀드 회수자금 재투자 및 신규자금 조달을 통해 9,400억원(기존자금 재투자 2,600억원 + 신규자금 6,8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

*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

** 성장사다리펀드 누적 조성액은 6.3조원 → 7.2조원으로 확대

-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총 투자액 : '16년 0.99조원 → '17년 목표 1.3조원

('17년 투자액 중 창업·벤처 부문 1,800억원, 기술가치 부문 3,000억원 지원 예정)

다 재기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 (재창업지원 확대)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창업지원*' 사업 활성화('17.상)

* 「재창업지원」사업: ①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 감면, ②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③신규 자금지원(중진공대출에 산·기보가 각각 25% 보증 공급)

- 한 번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창업 지원 확대 (→신·기보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

가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

- (금융개혁의 상시화) 기존 금융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개혁과제 제도화)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① 국회 계류 법률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법률
 - ② 입법절차 진행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 (이행점검 강화) 음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해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성과중심 문화 정착 등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
 - (신규과제 발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은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행
 - 금발심 분과별로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금융개혁 과제 발굴에 주력
-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규제민원포털 개선, 비조치 의견서 및 음부즈만 제도 활성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 (금융규제 민원포털) 주제별* 카테고리화, 키워드 검색 기능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 영업·업무규제, IT보안, 건전성, 금융상품·광고, 자본시장·회계 등

-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각 업권 협회를 통해 비조치 의견서를 접수하고 일괄회신* 지속 추진
 - * '16.2월과 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한 전례
- (음부즈만 제도 활성화) 음부즈만 블로그*(17년 1분기)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 * '16.2월 출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고 금융현장의 고충민원 접수·개선권고 등 수행
- (외국계 금융회사 TF 운영) 분기마다 외국계 금융회사 TF를 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 지속 발굴·해소
- (패자부활전) '불수용 과제'도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 관리(17년말)
 - * (수용과제) 분기별 성과평가회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성과 보고회 개최
 - * (불수용과제) 반기별 재검토회의 → 연말 패자부활전 → 수용여부 재결정
-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금융개혁의 최종수혜자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 통로도 확대, 홍보 지속 강화
 - (현장메신저 확대 개편)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으로 현장메신저*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
 - *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자로 구성 → 분기별 간담회로 의견 청취
 - (기업·소비자 점검 확대) 월 1회 일반 기업·금융소비자 현장 방문 실시를 통해 최종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확인
 - (취약계층 현장점검 추진) 장애인,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까지 점검대상에 포함,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

나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1) 신탁업 역할 확대

- (신탁 전면개편)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전면개편(17.하)
 -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소
 - 자기신탁(사업부문일부 신탁설정), 수익증권발행, 유동화신탁 등을 통해 신탁의 자금조달·유동화 기능을 확충
 - 신탁업자 자율성 확대에 대응하여 위탁자 및 수익증권 투자자 등 고객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

(2) 보험업 경쟁력 강화

- (보험업 자율성 확대) 표준약관은 민간(보험협회)이 자율적 제·개정(17.1분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 *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금감원이 변경 명령
-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된 사전적 한도·비율 규제를 완화(17.1분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단종보험* 활성화) 국민일상생활과 밀착된 1회성 소액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17.상)
 - * “單種보험” :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예시 : 항공사·여행자보험 등)

- (실손의료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미청구자 대상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17.2분기)
 - *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 미청구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할인
 -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암·사망보험 등과 분리·판매(18.4월 시행)하도록 규정(17.1분기)
 -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중단없는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 방안* 마련(17.4분기)
 - *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 허용, 단체실손 의료보험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일시 중지제도 등 검토
- (자동차보험 합리화·선진화)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선제 대응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차등화* 및 공동인수 대상 명확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지속
 - * (현행)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할증 적용 → (변경) 가해자·피해자 할증 차등화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출시 등 지원(17.2분기)
 -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
 -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 착수(17.2분기)
 - * (예)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

(3)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거래소 구조개편)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초대형 투자은행) 초대형 투자은행이 기업금융 등 새로운 영업을 차질없이 개시(17.2분기)할 수 있도록 준비
- (국채 담보 재활용)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17.상)
-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고 전자증권도입 로드맵을 마련(17.하)하는 등 '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 전자증권법(16.3.22 공포)은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 시행
-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장요건을 간소화(17.4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부문*에 대한 신상품 상장 추진
 - * ETF, 미니달러, 해외지수, 초장기국채, 개별주식 등
- (파생결합증권)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과정 녹취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17.2분기)

(4)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 (제도개편) 금융지주회사를 시너지 강화 및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개편 (17.3분기 법령 개정)
 - 지주회사 내 겸직·업무위탁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정보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제약하는 핵심규제 완화
 - 사업부문제 활성화 및 공통 후선업무 통합수행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 유도

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

◆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금융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 금융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

- (금융외연 확장) 저성장·저금리 극복 및 新시장 금융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회사·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 업계를 중심으로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한 정례 회의체(해외진출동향 점검회의) 운영
 - 동남아시아 등 新시장에 한국형 금융인프라 수출 적극 추진
 - * 기재부(KSP), 외교부(ODA) 등이 운영하는 해외 진출사업 적극적 참여 지속
 - * 실무급회의·초청연수·금융협력포럼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 수요 적극 발굴
- (금융의 글로벌위상 강화) 금융중심지 역량 제고 및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국제금융거래 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정책목표로 하는 「제4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7~19)」 수립
 - 현지규제로 인한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해소 등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체^{*} 확대 등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나·베트남('15) 등과 정례회의 개최 중
- (자본시장 국제화) 외국인 통합계좌^{*} 단계적 도입, 국경간 펀드 개방(펀드패스포트) 준비^{**} 등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
 - *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통합계좌(일괄주문·결제) 및 상장채권 일괄주문 도입 방안을 검토·추진(상반기)
 - ** 펀드패스포트(국경간 펀드판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장개방) 시행을 위해 펀드 등록·운용·감독 등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법개정 추진
-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외은지점 영업규제(신용공여한도 등)를 주요국 사례 및 외은지점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17.6월)
 -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방안 마련 추진(연중)

핵심과제⑫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 (규제·제도 혁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의 재설계 추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17.2분기)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 * 비조치외건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 재검토(17.1분기)
- (신기술·금융 융합)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17.1분기)
 - * 외국인 지정거래은행 변경절차 간소화, 인증절차 통합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 (지원체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지원을 강화
 - 핀테크 산업 성장에 맞추어 감독·지원체계를 정교화·체계화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17.1분기)
 - *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지원 강화 등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17.1분기)
 -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

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

- (바이오페이 도입) 실물카드 없이 생체정보(예: 손바닥 정맥)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거래방식 시범도입(17.상)
 - 관련 법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도입기반 정비 후, 의향있는 카드사부터 시범운영하여 안전성·편의성 등을 검증
 - * 예) 법규해석상 생체정보 인증을 신용카드 제시로 보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서명·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등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 24시간 이용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영업개시(케이뱅크2월말~3월초/카카오뱅크상반기, 잠정)
 - * (새로운 서비스모델)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결제·송금,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고도화) 이용채널·대상계좌를 확대(4월)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17.10월)
 - *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accountinfo.or.kr) → 은행창구 및 모바일 확대/ (대상계좌) 잔액 30만원계좌 → 50만원 / (이용시간) 09~17시 → 09~22시
- (보험다모아 개선)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과 인터넷 포탈 간 연계서비스를 개시(17.7월)
 - 양방향 소통을 위한 보험상담 게시판 개설, 소비자에 유익한 보험정보 안내 강화 등 홈페이지 개선 추진(17.4분기)
- (비대면 실명거래 확대)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대상 확대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17.1월)
 - *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장애인고령자의 APP 접근성에 관한 권고규정 신설
- (빅데이터)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분석·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역량 제고(17.상)
 - 신정원에 신용표본연구 DB*를 구축하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계·공공기관 등의 활용 지원
 - * 신정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전체의 2% 수준으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처리한 데이터

다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

-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17.5월 업무개시), 독립투자자문업^{**}(17.3월 등록요건·절차 신설)을 통해 **국민 금융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 강화**
 - * 테스트베드(1차 : 1~4월, 2차: 2분기) 통과 후, 대고객 서비스 실시(5월)
 - **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개선을 마무리(3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에서의 조기 정착 유도(17.상)
- 금융상품의 **자문부터 구매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시 투자권유절차^{*} 정비**(17.상)
 - * 투자자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을 단순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
- (ISA) 출시 1년(17.3월) **성과평가 후, ISA 세제혜택 확대,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17.하, 관계부처 협의)
 - * ISA 세제혜택을 현행대비 2배 확대, 중도인출 허용, 만60세 이상 노년층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
- (펀드시장 활성화) **성과보수 펀드 출시**(17.1분기), **우체국·상호 금융 펀드판매 허용 및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확대 추진**(17.상)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액티브 ETF, 창업·벤처 PEF 등 **다양한 펀드상품 출현** 도모(17.1분기)
- (개인연금법 제정)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 제정^{*}**(17.2분기 국회제출)
 - *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도입,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 (고령화 대비 보험)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 추진**(17.4분기)
 - * 예) 노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장기 간병보험 표준화 유도 등

Ⅲ.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기구 및 조직
2. 부서별 주요기능
3. 정원 및 현원
4. 2017년 예산 및 기금 현황
5. 소관 법률 현황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1 기구 및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3정책관 20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2 부서별 주요기능

구분	주요 기능
기획조정관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구조개선정책관	·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국제협력관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금융서비스국	·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대변인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금융현장지원단	·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접수 · 금융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사후관리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3 정원 및 현원

□ 정원 : 258명, 현원 : 266명 ('17.2.10.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245	3	8	258
(현원 합계)	(2)	(253)	(3)	(8)	(266)
본부	2	211	3	-	216
금융정보분석원	-	42	-	8	50

4 2017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17년 소관 예산 : 1조 9,534억원 ('16년 대비 △3%)

○ '17년 금융위원회 운영예산은 1,534억원 ('16년 대비 △28.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일반 회계 (I + II)	2,014,174	1,953,414	△60,760	△3
I. 금융위원회 운영	214,174	153,414	△60,760	△28.3
○ 인 건 비	22,556	23,330	774	3.4
○ 기 본 경 비	7,372	7,436	64	0.9
○ 사 업 비	184,246	122,648	△61,598	△33.4
II. 내부 거래	1,800,000	1,8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1,800,000	1,800,000	-	-

* 주요 사업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설립)(650억원), 국제중재 수행(39억원),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10억원) 등

□ 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16조 1,235억원 등 금융위 소관 7개 기금 운용계획은 총 37조 1,433억원('16년 대비 23.8%)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6년 (A)	2017년 (B)	증감	
			B-A	%
공적자금상환기금	11,163,473	16,123,501	4,960,028	44.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431	86,563	△13,868	△13.8
신용보증기금	4,872,189	5,334,747	462,558	9.5
기술보증기금	2,468,867	2,408,997	△59,870	△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15,978	1,007,434	△8,544	△0.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883,456	3,190,784	△692,672	△17.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481,124	8,991,280	2,510,156	38.7
합 계	29,985,518	37,143,306	7,157,788	23.8

5 소관 법률 현황

□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43개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5)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3)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자금융 관련 (2)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소서민금융 관련 (6)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 공포 및 시행일 미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 8개 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 기업 등의 신용보장을 위한 보증지원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용,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전세자금 및 주택건설자금 대출보증, 주택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② 기타 산하공공기관 : 1개 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업무 수행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 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준정부기관	자체 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5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기타 산하공공기관		-	1